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 - 38 - 187호

안 건 명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6. 24.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금액 : 3,0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I.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용량 웹하드 서비스 제공 사이트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 대표이사 | 설립일자 | 자본금 | 주요서비스 | 종업원 수 |
|------|------|-----|-------|-------|
| | | | | |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3년 평균 |
|-----|-------|-------|-------|-------|
| 매출액 | | | | |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신고 된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9. 8. 29.)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보유 현황

3. 피심인은 까지 대용량 웹하드 제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19. 8. 29.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 구분 | 항목 | 수집일 | 건수 |
|------|------------------------------------|-----|----|
| 회원정보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 |
| 총계 | | | |

나. 사건경위

4. (양·수도 계약 체결) 2019. 1. 21. 피심인은 2019. 3. 1.자로 에 관련 도메인 소유권 및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 장비 등 용의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6. (개인정보 이전 공지) 2019. 3. 6. 피침인은 서비스 영업 양도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사항을 대표 사이트
PR/IR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3. 사실 과정

가.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

7. 피신인은 2019. 3. 6. 이용자 개인정보 155,788건을
이전하면서 같은 날 피신인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
사항에는 “고객님께서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과 계약관계의 이전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또는 클
서비스 내정보관리>개인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통하여 개
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자체를 철회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9. 3. 6.에
가
로 통합된 이후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내정보관리>개인정보 변경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있다.

나. 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8.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1. 1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11. 26.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1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 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2호)’,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3호)’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 서면 · 모사전송 ·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10.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정보



통신망법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11.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제1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제2호),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3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고,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 사업자 명 | 위반 내용 | 법령 근거 | | |
|-------|-------|-------|--------|--|
| | | 법률 | 시행령 | 세부내용(고시 등) |
| | 영업 양도 | §26① | §11①,② | 영업의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 |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12.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고,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3. 피침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태료 부과

14.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침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 제2항제2호 | 600 | 1,200 | 2,0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위반 과태료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 위반조문 | 기준금액 | 가중 | 감경 | 최종 과태료 |
|------|-------|-------|----|--------|
| §26① | 600만원 | 300만원 | 없음 | 300만원 |
| 계 | | | | 300만원 |

다. 최종 과태료

18.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0,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19.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2항(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20.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 피침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24일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표 철 수



위 원 허 옥 (안)



위 원 김 창 룡



위 원 안 형 환

